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
-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체결합니다.
- ② 계약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사항 및 시설의 이용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④ 수급자의 인적사항, 장기요양등급, 인정유효기간, 보호자 연락처 등 주요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.
- ⑤ 보호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장기간 보호자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에 알려야 합니다.

2.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 취소에 관한 사항

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
 -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으로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
 - ③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
 - ④ 시설의 운영규정 및 공동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⑤ 그 밖에 수급자와 시설 간 합의에 따라 취소가 필요한 경우
- ※ 취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.

3. 의뢰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절차

-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② 정기적인 병원진료 또는 수술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③ 응급상황 또는 수술·입원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④ 시설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며,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.
- ⑤ 시설은 수급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
4. 시설물 및 비품 사용에 관한 사항

- ① 시설의 비품 및 기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임을 고려하여 소중히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의 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③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이용 시 직원의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④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.

5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

- ① 시설은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- ② 수급자의 개인정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행정업무 등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습니다.

6.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
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용 관련 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 / 부천다나요양원 ☎ 032-671-4008

부천다나요양원